

# '05기 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 청소년육성기금  
(명칭변경: 구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음 성 군

##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보고서

### I. 기금의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 1986년(조례제정일 1986. 10. 28 조례 제956호)
- 재 원 :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성금 등
- 기금구성 : 1987년 ~ 2005년(19년간)
- 기금운용 : 2002년 ~ 2005년(최초지급 2002년)
- 지급인원 및 지급액: 학자금 10명, 직업훈련비 17명 / 25,164천원

○ 기금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05년도 운용현황		'05년말 현재액	'06년 운용계획			'06년도 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8	5	308	10	9	1	309	

### II. 존치분석

#### 1. 총 평

- 본 기금은 건전 청소년육성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1986.10.28 조례 제956호)하여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작미진학 청소년의 진학(취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1987년부터 2001년까지 15년간 자치단체출연금, 성금,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288백만원을 조성(목표액250백만원의 115%)한 후 2002년부터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의 90% 범위내에서 기금 운용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 조성하여 재원의 적정성을 도모하였음.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사업의 기금 지급 및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는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관련 중복성 여부를 검토한 바, 지급목적·대상·내용, 대상자 선정 및 지급절차·방법 등 제반 여러사항에 차이가 있어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은 중복성이 없는 차별적인 사업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푸른 성장을 도모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사료됨.

## 2.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p>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p> <p>음성군 청소년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진학(취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여 건전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함</p>	<p>관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정과 무작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p> <p>○ 학자금 지원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고등학교 입학준비가 어려운 청소년에게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p> <p>○ 직업훈련비 지원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노동부 직업훈련원의 급식비 및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p> <p>○ 자립정착금 지원 농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사업 추진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청소년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p>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단위: 천원, 명)

청소년자립지원 사업	지원실적								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총 계	5,879	13	9,455	4	4,370	4	5,460	6	25,164	27
학 자 금 지 원	4,027	7	1,827	2	1,130	1	0	0	6,984	10
직업훈련비 지원	1,852	6	7,628	2	3,240	3	5,460	6	18,180	17
자립정착금지원	0	0	0	0	0	0	0	0	0	0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3	해당없음
	'04	해당없음
	'05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단위: 천원)

사업명	'05년 사업비	이유	불가피성 정도
청소년자립지원 사업	5,460	<p>관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운용기금을 집행함에 따라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이 사업비 집행계획에 증감요인으로 발생하여 일반회계와 달리 신축적 집행이 용이한 기금운용이 적합함</p> <p>청소년자립지원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매년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을 재적립 증식하여 일반회계와 달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p> <p>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 지원을 위해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운영이 필요</p> <p>변화되는 사회경제적 여건등으로 무작비진학 청소년이 급증함에 따라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안정적인 재원 운용이 필요함</p>	중
합 계	5,460		

###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사업의 기금 지급 및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는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관련 중복성 여부를 검토한 바, 다음 각 사항에 있어 구분되어 사업의 중복성·유사성이 없음

구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사업(타기금)	고용촉진 훈련 (일반회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비고
지급 목적	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지급	영세 농어민 등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 훈련실시로 자활기반 확충 및 산업수요에 부합한 인력 양성 공급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통해 건전청소년 육성	
지급 대상	수급자 및 영세농어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 수급권자, 장애인, 농업인 가족 및 취업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청소년 및 무직 미진학 청소년 중 타 법령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자는 제외	
지급 내용	특별장학금, 일반장학금 지급	훈련생에 대해 훈련수당, 식바교통비 지급	학자금 :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직업훈련비 : 노동부 직업훈련원의 급식비 및 시설학원 수강료 자립정착금 :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사업비	
대상자 선정	읍면장 추천에 의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선발 기준에 의거 신청자 선정	읍면장 추천에 의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타 기금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구 분	기금사업(금액)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금액)	기금운용관 입장
기금운용계획심의회 지방의회 지적사항('0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각종 감사 지적사항	'03	-	-
	'04	-	-
	'05	-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권고	-	-	-
기 타	-	-	-

○ 기금과 예산간의 역할분담 기준 및 조정방안 : 의견없음

#### 4.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근거 법규	설치 목적	설치 년도	재원 조달	적립액			2006년 사용액	2006. 12.31 현재액
					2005년 까지	2006년	계		
청소년 육성 기금	음성군청소 년육성기금 설치 및운용조례	청소년 자립 지원	1987	출연금 및 이자수입	308,144	9,561	317,705	8,500	309,205

○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단위: 천원)

구 분	'03	'04	'05	'06	비고	
수 입	합 계	307,907 %	309,038 %	313,604 %	317,705 %	
	출연금					
	기금사업수입					
	이자수입	12,676	10,586	8,937	9,561	
	융자금회수					
	순세계잉여금	295,231	298,452	304,667	308,144	
	예치금회수					
	기 타					
지 출	합 계	307,907	309,038	313,604	317,705	
	고유목적 사업비	9,455	4,371	5,460	8,500	
	인건비					
	재적립금 (이월금)	298,452	304,667	8,144	9,561	
	예치금			300,000	299,644	
	예탁금					
	기 타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 5.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푸른성장을 도모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 Ⅲ. 성과분석

#### 1. 총 평

##### 1. 주요사업 추진실적

###### ○ 기금 조성실적

- 출 연 금 : 128백만원 (1987~1998)
- 성 금 : 4백만원 (1987~1988)
- 이자수입 : 198백만원 (1988~2005)
- 기 타 : 3백만원 (1988)
- 합 계 : 333백만원 (1987~2005)

###### ○ 기금 지원실적

(단위: 천원)

청소년자립 지원사업	지원실적								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총 계	5,879	13	9,455	4	4,370	4	5,460	6	25,164	27
학 자 금	4,027	7	1,827	2	1,130	1	0	0	6,984	10
직업훈련비	1,852	6	7,628	2	3,240	3	5,460	6	18,180	17
자립정착금	0	0	0	0	0	0	0	0	0	0

※ 1987년 ~ 2001년까지 15년간 자치단체출연금, 성금,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288백만원을 조성(조성목표액250백만원의 115%)한 후

※ 2002년부터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의 90% 범위내에서 기금 운용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 2005년 12월말 까지 308백만원을 조성함

##### 2. 잘 된 점

- 기금 지원을 통해 진학 및 기술습득을 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3. 미진사항 및 문제점

- 운용계획에 비하여 신청자가 미소 미흡함

##### 4. 향후 조치계획

- 실질적인 수혜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대상 청소년의 신청에 의한  
지원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수혜자를 발굴하는 등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하여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2. 사업의 운영성과

### 청소년육성기금

#### 가. 사업개요

##### ①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작미진학 청소년의 진학(취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여 건전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함

##### ②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추진경위 : 기금조성 1987년~2005년(19년간)  
기금운용 2002년~2005년(최초지급 2002년)

##### ③ 사업내용 개요

###### - 사업비

- 2002년 사업비 : 6백만원
- 2003년 사업비 : 9백만원
- 2004년 사업비 : 5백만원
- 2005년 사업비 : 9백만원

- 사업기간 : 2002.1 ~ 2005.12(연도별 사업실시)

- 사업형태 : 보조사업

##### ④ 사업내역

구분	사업물량(명)	사업금액(백만원)	비고
학 자 금 지 원	10	7	보조사업
직 업 훈 련 비 지 원	17	18	보조사업
자 립 정 착 금 지 원	0	0	보조사업

⑤ 2005년도 주요 사업내용 변경사항 : 해당없음

## 나. 사업내용의 적정성

### ①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업목적의 적정성

-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 범위내에서 어려운 청소년과 무작미진학 청소년에게 자립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푸른성장 및 건전 청소년 육성이라는 정책목표,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함

- 사업내용의 적정성

- 어려운 청소년과 무작미진학 청소년에게 조례에서 정한 사업내용인 학자금,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고등학교 입학준업이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무작미진학 청소년에게는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 청소년 육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달성함

### ②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의 합리성·투명성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절차에 대한 개괄적 기술

- 기금 운용계획서 의회제출(회계년도 개시 40일전) → 공고 및 홍보 → 지원자 신청  
 읍면 접수 → 읍면장이 매년 2월 20일한 대상자선발 추천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 대상자 선발 → 읍면장 및 수혜자에 통보 → 지원대상자 점검확인 후 기금 집행 →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
-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지원 신청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하고, 읍면장 추천시 해당기준을 설정하여 수혜자 선정에 합리적 근거를 제시함
-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읍면장의 추천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다. 사업운영의 성과

####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04년도			200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	4	83.87	7	5	75.83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

#####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04년	○ 학자금 지원 (1,130천원, 1명) ○ 직업훈련비 지원 (4,080천원, 3명)	○ 학자금 지원 (1,130천원, 1명) ○ 직업훈련비 지원 (3,240천원, 3명)	83.87%
'05년	○ 직업훈련비 지원 (7,200천원, 6명)	○ 직업훈련비 지원 (5,460천원, 6명)	75.83%

##### - 정성적 평가

- 관련기관 참여도 : 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으로 기대효과 달성

- 사업홍보 : 지방지 및 군 소식지에 기재하여 홍보효과 달성
- 수혜자 태도 : 학자금 및 직업훈련비 수혜자의 성실한 태도로 진학 및 취업 달성

- 만족도 평가 및 개선정도

- 수혜자의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 만족함

라.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① 개선노력

- 제목 및 핵심내용 : 청소년육성기금 지급대상자 확대  
(직업훈련비 지원대상자 중 진학포기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미진학 예정자까지 확대 지원)
- 도입배경 및 동기 : 수혜자 확대
- 추진경위 및 절차 : 재학중인 미진학 예정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아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
- 개선효과 : 미진학 예정자까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마. 기타 특이사항

의견없음

3. 자산의 운용성과

가. 자산운용개선노력

-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만기 이자 지급식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이와는 별도로 운용 기금은 기금

집행의 탄력성 및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함

**나. 기금운용자금의 연간수익률**

○ 운용수익률

- 평잔수익률(상품별 연 수익률을 일일운용잔액을 기준으로 가  
중 평균하여 구한 수익률) : 4.013%

2003년 1월 3일부터 2004년 1월 2일까지 만기 이자지급식 1년  
정기예금(연 이자율 4.45%)으로 285,230천원을, 2004년 1월 2  
일부터 2005년 1월 2일까지 만기 이자지급식 1년 정기예금  
(연 이자율 3.6%)으로 300,908천원을 예탁하였음.

따라서, 평잔수익률은 4.013%임.

$$\begin{aligned} & \{285,230\text{천원} \times (365\text{일}/365\text{일})\} \times 0.0445 + \{300,908\text{천원} \times (365/365\text{일})\} \times \\ & 0.036 \div [285,230\text{천원} \times (365\text{일}/365\text{일}) + 300,908\text{천원} \times (365\text{일}/365\text{일})] \\ & = 0.04013 \end{aligned}$$

○ 통합관리기금 활용실적 : 미활용

**다. 공유재산 및 채권관리의 적정성**

○ 공유재산의 관리실태 : 해당없음

○ 채권의 발생 및 소멸현황 : 해당없음